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시험항목	세부항목		감점	채점요령
가. 출발 전 준비 (3)	차문 닫힘 미확인(1)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이 출발할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거나 주행 중에 자동차문이 열린 경우에 채점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2)	차량승차 전·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 승차 전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전·후·좌·우의 안전을 직접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3)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10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채점
나. 운전자세(2)	정지 중 기어 미중립(4)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고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10초 이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클러치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 채점(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신

		때에는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10초 이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중립위치에 두지 않은 경우 채점)
다. 출발 (10)	20초 내 미출발(5)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10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출발이 20초 이상 늦어진 경우 채점
	10초 내 미시동(6)	엔진시동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시동이 정지된 경우로써 10초 이내에 다시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 채점
	주변 교통 방해(7)	진행신호 중에 기기 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다가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엔진 정지 (8)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의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거나 차량 고장으로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경우 채점
급조작·급출발(9)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 등의 조작이 능숙하지 못하거나 급조작하여 급출발을 하는 경우 또는 지나친 공회전이 생기는 경우 채점
심한 진동(10)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 등의 조작이 능숙하지 못하여 차에 심한 진동이 발생한 경우 채점
신호 안함(11)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로 진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 채점
신호 중지(12)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채점
신호 계속(13)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차된 차를 운전하여 차로로

		계속켜고 있는 경우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호를 하는 경우 채점
	시동장치 조작 미숙 (14)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엔진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임에도 시동을 걸기 위하여 시동키를 돌리는 등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채점
라. 가속 및 속도 유지(3)	저속(15)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맞게 주행하지 못하고 저속 주행하는 경우 채점
	속도 유지 불능(16)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를 때 내야 하는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채점
	가속 불가 (17)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를 때 내야 하는 통상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그 속도에 맞는 기어변속을 하지 못한 채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경우 채점
마. 제동	엔진 브레이크	정지하기 위해 제동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및 정지 (4)	이크 사용 미숙 (18)	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이전에 클러치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한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둘 때를 말한다)
제동 방법 미흡(19)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상태에서 미리 발을 브레이크페달로 옮겨 놓지 않는 경우 채점
정지 때 미 제동(20)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에 채점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때 클러치페달만 밟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 채점
급브레이크	정지하거나 제동할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사용(21)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급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뒤따르던 차에 위험을 주거나 차 내 탑승자가 심하게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 채점
바. 조향(1)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2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복원이 늦은 경우 2)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4)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5)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6) 핸들을 조작할 때 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린 경우, 핸들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경우,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경우,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거나 한손으로 잡은 경우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 등으로 차량의 안전운전 위험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채점
사. 차체 감각(2)	우측 안전미확인(2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나란히

		<p>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p> <p>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p>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않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고개를 숙여 후사경 등을 통하여 사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말려뚝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채점</p>
	1미터 간격 미유지(24)	<p>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주·정차 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p>	7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데도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점</p>
아. 통행 구분(4)	지정차로 준수위반 (25)	<p>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p>	7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채점</p>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26)	<p>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p>	7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p>

속을 한 경우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 6)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경우 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채점

	<p>통행하려고 한 경우</p> <p>7)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p> <p>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p> <p>나) 오르막길의 정상부근</p> <p>다) 급한 내리막길</p> <p>라) 교차로</p> <p>마) 터널 안</p> <p>바) 다리 위</p> <p>사)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p> <p>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p>		
<p>끼어들기 금지 위반 (27)</p>	<p>1)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p> <p>2)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p>	<p>7</p>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정당한 차로변경과 달리 빨리 가기 위해 신호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p>

		협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		진행하는 경우 채점
	차로유지 미숙(28)	1)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2)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 3)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5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시험용차량이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또는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채점(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부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진로 변경(8)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고개를 돌리거나 후사경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 경우 채점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30)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를 변경할 때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해당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채점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31)	진로변경 30미터 앞 쪽 지점부터 변경 신 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를 변경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진로변경 30미터 앞쪽지점부터 진 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 로 해당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채점
진로변경 신호 미유 지(32)	진로변경이 끝날 때 까지 변경 신호를 계 속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신호 미중 지(33)	진로변경이 끝난 후 에도 변경 신호를 중 지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 고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고 10미터 이상 계속 해서 주행하는 경우 채 점
진로변경 과다(34)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 해서 진로를 변경하 는 경우	7	· 시험시간동안 채점하며, 뒤쪽이나 옆쪽 교통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속적 으로 2차로 이상 진로변 경을 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금지장소에 서의 진로 변경 (35)	1) 진로변경이 금지 된 교차로, 횡단보 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 양선을 밟거나 넘어 가서 유턴한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 횡단보도 등 진 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 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간 상태에서 유턴하 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1) 뒤쪽에서 진행하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미숙(36)	<p>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p> <p>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p>		<p>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뒤쪽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p>
차. 교차로 통행 등 (7)	서행 위반 (37)	<p>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p> <p>1)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p> <p>2)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p> <p>3)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p> <p>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p> <p>5)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p>	10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서행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점</p>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38)	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장소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채점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39)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채점
신호차 방해(40)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꼬리 물기 (41)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	7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p>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p>	<p>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채점</p>
<p>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42)</p>	<p>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p> <p>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p> <p>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p>	<p>7</p> <p>•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p>

		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 직전 일시 정지 위반 (43)	1) 횡단보도예고표시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	• 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채점횡단보도예고표시가 있는 지점부터 서행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거나,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채점
카. 주행 종료(3)	종료주차 브레이크 미작동(44)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5	• 시험종료 후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채점
	종료 엔진 미정지(45)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5	•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는 경우 채점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46)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5	• 시험종료 후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점

※ 비고

- 가. 과제란의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 나. 항목란의 ()는 전체 46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 다.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라. 내용란의 각 호의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 마.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알리면 응시자에게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 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정정)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경우 채점표 사본을 내주고 감점이유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합격기준

-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3)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4)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5)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6)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9)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10)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